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21
------------	----

제출연월일 : 2002년 월 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안이유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와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설치운용조례」를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로 통합 및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 문화예술진흥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지정·육성하고자 지정대상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17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함 (제3조)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 지정,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함 (제4조)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범위와 지정절차를 정함 (제10조)
 - 무대예술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 극단, 무용단, 국악단 등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2년간 지정
-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는 근거 명시함 (제11조)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조성함 (제12조, 제13조)
-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에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고하고 기금은 충청북도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활동에 사용함 (제14조)

의안전문 : 따로 불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불임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2조(설치)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지정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전문위원을 2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10조(지정 및 해소) ① 도지사는 도내에 소재지를 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1. 무대예술공연장 운영 법인·단체
 2. 극단·뮤지컬단·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오페라단·실내악단·창극단·국악단·공연 기획단 또는 이와 유사한 예술단을 운영하는 법인·단체
 3. 전시행사의 개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 ②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유효기간은 자정후 2년으로 하며 재지정할 수 있다.
- ④전문예술법인·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 도지사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육성) ①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②공공 공연·전시시설 운영자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의 공동 기획공연·전시를 조건으로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

제12조(설치·관리) 충청북도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과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이하 "운용기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관리한다.

제13조(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원금
 3. 문화예술단체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주민 및 기관단체 등이 기탁한 성금 등
-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의 이자 수입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및 주민성금 등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등)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고하여야 한다.

- ②기금은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 계좌로 운용하며, 적립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도금고 또는 은행에 장기 예치할 수 있다.
- ③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등의 활동
2. 문화 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3. 문화예술의 전통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도지사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임명하며 기금운용관은 문화관광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운용기금의 집행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및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조례의 폐지)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 및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관계법령 발췌

□ 文化藝術振興法

第4條 (地方文化藝術振興委員會) 地方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중요

시책을 審議하기 위하여 特別市長·廣城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소속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地方文化藝術振興委員會를 둘 수 있다.

第10條 (專門藝術法人등의 지정·육성)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特別市·廣城市 및 道에 한한다)는 文化藝術振興을 위하여 專門藝術法人 또는 專門藝術團體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專門藝術法人은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寄附金品을 모집할 수 있다.

③專門藝術法人 또는 專門藝術團體의 지정 및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國家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으로, 地方自治團體의 경우에는 條例로 정한다.

第22條 (地方文化藝術振興基金의造成) ①特別市·廣城市 또는 道는 당해 管轄區域의 文化藝術振興을 위한 사업이나 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地方文化藝術振興基金을 設置할 수 있다.

②地方文化藝術振興基金은 市·道知事が 運用·관리한다.

③市·道知사는 地方文化藝術振興基金의造成을 위하여 寄附金品募集規制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개인 또는 法人으로부터 寄附金品을 寄附받거나, 第19條第1項 各號의 施設을 제외한 施設중 條例로 정하는 施設을 觀覽하거나 이 용하는 者에 대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募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寄附金品을 寄附하는 者는 特定團體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등 그 用途를 정하여 寄附할 수 있다.

④市·道知사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金品을 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價額 및 品名을 文化觀光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地方文化藝術振興基金의造成·用途 및 運用, 地方文化藝術振興基金支援審議委員會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